

참고

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내용

구 분	현행 규정	특례적용 시 (적용기준)
수의계약 절차	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	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(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로 특례적용 기간 내에 수의 계약 체결이 완료되는 경우)
입찰보증금	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	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(입찰공고일이 특례적용기간 내 있는 경우)
계약 보증금	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	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(특례적용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)
공사이행보증금 ※ 계약보증금 대체	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	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(특례적용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)
검사기간	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연장 7일	완료통지일로부터 7일 연장 3일 (특례적용기간 내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았을 경우)
대가지급	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	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(특례적용기간 내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)